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29
----------	------

2017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7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7년 10월 24일
- 라. 상정일 :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가.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인문교양, 민주시민, 학점은행제 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평생학습 교육사업으로,

- 나.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가 '18년 1월 준공예정인 바, 市 직영 운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본부캠퍼스 개관, 교육과정 확대 등 신규 사업 증대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 다.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및 같은 조례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제3호

〈추진 필요성〉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13년 설립 이후 평생학습 교육사업으로 성장·발전하면서 운영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등 市 직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적 운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서울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자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사무 내용

-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학점은행제 및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 학습자 모집·관리 및 강사 관리 풀 구축·운영
- 대학 연계 시민대학 및 민간단체 협력 공모 사업 운영
-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
- 캠퍼스별 시설 관리·운영, 보안·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연면적 1,485㎡(지하1층 ~ 지상3층)
- 시설용도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도보 15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주변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18. 1. 1. ~ 2020.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200백만원('18년)

예산항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총계	3,199,880	
인건비	1,166,600	◦ 17명(기본급 및 제수당) ▶ 시민대학장(1명) : 27,072천원*1명=27,072천원 ▶ 사무국장(1명) : 75,675천원*1명=75,675천원 ▶ 팀장(2급, 2명) : 58,499천원*2명=116,998천원 ▶ 대리(3급, 4명) : 47,989천원*4명=191,956천원 ▶ 주임(4급, 9명) : 38,247천원*9명=344,223천원
사업비	1,688,180	◦ 교육과정 개발 자문단 : 46,800천원 ◦ 캠퍼스별 교육과정 운영비 : 738,780천원 ◦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 : 637,600천원 ◦ 네트워크 시민대학 사업 : 100,000천원 ◦ 홍보 및 온오프라인 소통강화 : 80,000천원
운영비	345,100	◦ 캠퍼스별 공공요금 : 103,100천원 ◦ 본부캠퍼스 시설관리 유지비 : 242,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을 평생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관련 조례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의 개요 >

○ 개요

- 소재지 :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연면적 1,485㎡(지하1층 ~ 지상3층)
- 시설용도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 민간위탁 기간 : 3년(2018. 1. 1. ~ 2020.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 소요예산 : 3,200백만원(2018년)

○ 위탁사무 내용

-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학점은행제 및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 학습자 모집·관리 및 강사 관리 풀 구축·운영
- 대학 연계 시민대학 및 민간단체 협력 공모 사업 운영
-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
- 캠퍼스별 시설 관리·운영, 보안·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자유시민대학 현황 >

□ 서울시민대학 학습장 현황 : 총 27개소 (권역별 캠퍼스(4) + 대학연계 시민대학(23))

○ 권역별 캠퍼스(4개소)

구분	시민청 (도심권 캠퍼스)	은평학습장 (서북권 캠퍼스)	뚝섬학습장 (동남권 캠퍼스)	중랑학습장 (동북권 캠퍼스)
위치	서울시 시민청	(舊 은평소방서 2층)	방승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망우본동 복합청사
개원	'13. 1월	'14. 3월	'16. 3월	'16. 3월
시설 규모	태평홀 (367㎡, 100명), 워크숍룸(196㎡, 60명)	738㎡ (강의실 5개, 도서관 등)	129㎡ (강의실 2개, 사무실 등)	1,135㎡ (강의실 4개, 상담실 등)
교육 과정	인문교양과정 (4개 분야)	학점은행제 전문기역량강화과정 인문교양과정	인문교양과정 (4개 분야)	시민공동체교육, 부모교육 등 특화과정 인문교양과정
임대 구분	시민소통담당관 ※서울문화재단 운영: 일부시설 무상임대	서울시 소방서 ※소방서로부터 무상임대	방승통신대학교 ※학교협조로 무상임대	중랑구청 ※협약에 따라 무상임대
전경				

○ 대학연계 시민대학(23개소)

- 강의실은 대학별 3개 이내로 해당 대학에서 임의로 배치(강의실별 50~100명 규모)



- 위탁사무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캠퍼스별 시설 관리·운영, 교육과정(학점 은행제 포함) 설계 및 운영, 학습자 모집·관리 및 강사관리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의계약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임.
- 평생교육국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이 2013년 설립 이후 운영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나,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직영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인문교양 등 76개 강좌('13년) → 인문교양,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등 258개 강좌('16년)
 - ▶ 시민청 등 4개소('13년) → 시민청, 은평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등 27개소('16년)
- 본 동의안은 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강좌는 직영보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16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체계 구축 계획('16.11.22)에 따라 추진되었음.

< 2016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발췌 >

- 위원장 김창수 제가 앞에 직영 두 가지를 보면 이렇게 직접 직영을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왜 만들어 났어요?
-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이것은…….
- 위원장 김창수 이런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넘겨가지고, 직영하지 말고 직원들은 다른 데, 정책적인 입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하시고 이런 실무적인 일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겨줘야, 거기를 만들 때는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잘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니까 만들어졌다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지요

- 다만, 본 민간위탁은 27개 시민대학과 32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바, 민간위탁 시기의 적정성 여부,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 평생교육진흥원의 수탁능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매년 3월에 학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면서, 수탁시기를 2018년 1월로 계획하고 있어, 학사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책임규명과 제출시기 지연사유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추진과정 >

- | | |
|----------------|----------------------------|
| · 2017. 09.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 · 2017. 09. 2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 · 2017. 11.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및 심의 |
| · 2017. 12. | 비용심사, 협약서 적정성 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 |
| · 2018. 01. | 위탁사업 실시 |

- 아울러 평생교육국은 위탁시기와 관련하여 서울 자유시민대학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 일부가 고용승계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위탁사업이며, 대부분의 인력이 신규 채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본 위탁대상은 법률2)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 17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 전문성, 사무처리 등의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바,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 현황 (총 17명 채용예정) >

구분	필요인력	업무 내용
시민대학장	1명	○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총괄·대외활동(민간전문가)
사무국장	1명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업 총괄
사업운영	8명 (팀장포함)	○ 본부·캠퍼스별 교과과정 기획 및 운영 - 본부캠퍼스, 시민청, 은평, 중랑, 뚝섬, 금천 ○ 비학위과정 기획·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자·강사 관리 ○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및 교육정보 제공
사업지원	7명 (팀장포함)	○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공모·운영 ○ 대학과의 연계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 대학연계, 공유대학 사업 추진 ○ 홍보 전략수립, 홍보매체 관리 - 언론보도, SNS홍보, 전광판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본부캠퍼스 학습상담센터 운영(민원상담 및 처리) ○ 기타 민·관·학 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 콘텐츠 개발(온라인교육 기획) ○ 본부캠퍼스, 은평학습장 시설보안 및 안전관리 - 전기, 설비, 통신 등 시스템 관리 등 ○ 예산 및 회계관리

- 평생교육진흥원은 41억원의 예산과 1국 3팀 19명의 규모로 구성되었으나,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위탁규모는 32억원, 17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탁받을 여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진흥원 육성을 위해 기능강화 및 사업의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사업의 위탁이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및 역할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시기, 방법, 규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29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인문교양, 민주시민, 학점은행제 등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평생학습 교육사업으로,
- 나.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가 '18년 1월 준공예정인 바, 市 직영 운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본부캠퍼스 개관, 교육과정 확대 등 신규 사업 증대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 다.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및 같은 조례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3호

〈추진 필요성〉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13년 설립 이후 평생학습 교육사업으로 성장·발전하면서 운영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등 市 직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적 운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 서울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자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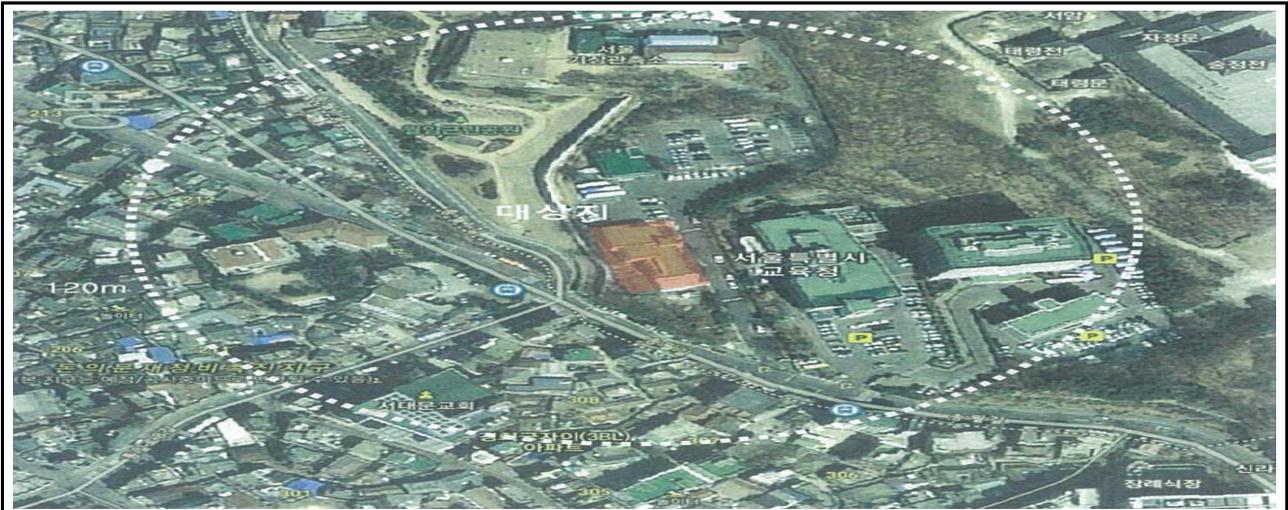
다. 위탁사무 내용

-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학점은행제 및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 학습자 모집·관리 및 강사 관리 풀 구축·운영
- 대학 연계 시민대학 및 민간단체 협력 공모 사업 운영
-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
- 캠퍼스별 시설 관리·운영, 보안·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연면적 1,485㎡(지하1층 ~ 지상3층)
- 시설용도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도보 15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주변
------	--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18. 1. 1. ~ 2020.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사업비('18년) : 3,200백만원

[사업예산(안)]

예산항목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총 계	3,199,880	
인 건 비	1,166,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명(기본급 및 제수당) ▶ 시민대학장(1명) : 27,072천원*1명=27,072천원 ▶ 사무국장(1명) : 75,675천원*1명=75,675천원 ▶ 팀장(2급, 2명) : 58,499천원*2명=116,998천원 ▶ 대리(3급, 4명) : 47,989천원*4명=191,956천원 ▶ 주임(4급, 9명) : 38,247천원*9명=344,223천원
사 업 비	1,688,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자문단 : 46,800천원 ◦ 캠퍼스별 교육과정 운영비 : 738,780천원 ◦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 : 637,600천원 ◦ 네트워크 시민대학 사업 : 100,000천원 ◦ 홍보 및 온오프라인 소통강화 : 80,000천원
운 영 비	34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별 공공요금 : 103,100천원 ◦ 본부캠퍼스 시설관리 유지비 : 242,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 김아름 (☎ 2133-3991)